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1

2018-1호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

■ 타시·도 의회 주요동향

－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시대 광주의 비전과 리더십 토론회 등 5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유료도로법 등 6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관련 등 질의 등 5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5)
-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7)
- ▶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9)
- ▶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16)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2)
- ▶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5)
- ▶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29)
- ▶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33)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시대 광주의 비전과 리더십 토론회 (35)
- ▶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개헌안 반영촉구 (36)
- ▶ 전라남도의회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관리방안 토론회 (38)
- ▶ 경상남도의회 의장단, 겨울철 지역현안 점검 (39)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성평등 워킹그룹 연구 도민대토론회 (41)



최근 제·개정 법령

- ▶ 유료도로법 (44)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6)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49)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1)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3)
- ▶ 한부모가정지원법 (55)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관련 등 질의 (57)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제5항 관련 질의 (60)
- ▶ 원주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질의 (63)
- ▶ 경기도 남양주시- 「평생교육법」 제21조의제3항 관련 등 질의 (66)
- ▶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질의 (69)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58호, 2018.1.4., 제정]

□ 주요목적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시민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
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시장은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2.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7.1.] [부산광역시조례 제5684호, 2018.1.10., 제정]

□ 주요목적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정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

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행정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 또는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7.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3.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 [경기도조례 제5816호, 2018.1.11., 제정]

□ 주요목적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공영제"란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버스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차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약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기본이윤"이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제4조제1항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등의 조정을 거쳐 책정된 이윤을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운송사업자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7. "적정이윤"이란 운송사업의 유지와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을 말한다.
8. "서비스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9. "비용정산시스템"이란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수입 및 운송비용과 관련된 업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경기도의회 의원

2.교통업무 담당 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 과장

3.시·군 교통업무 담당 과장

4.운송사업자 및 버스운송조합 대표 각 1명

5.교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위원회 사무 집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수입금공동관리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은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4.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5.제8항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6.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1.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 3.준공영제 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 4.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5.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 6.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7.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 9.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10.제12조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11.업체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12.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 13.그 밖에 운영수입금 관리 및 버스 발전을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공동관리)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업체협의회) ①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공동 관리를 위하여 업체협의회를 도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업체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체협의회 의무) 업체협의회는 비용정산시스템에 기반한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무
- 2.운송수입금 관리·배분에 관한 사무
- 3.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무
- 4.운송수입금 잉여금의 적립 및 적립금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 5.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유류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 6.교통카드 수입금 관련 사항
- 7.광고 및 그 밖의 수입원의 발굴에 관한 사항
- 8.그 밖에 위원회에서 업체협의회가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제14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도지사는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는 이후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거나 조정하기 이전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표준운송원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가로 비용을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①업체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송사업자 등 책무)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1.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 2.업체협의회는 수입금공동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

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제17조(조사·감사) ①도지사는 업체협의회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업체협의회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감사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업체협의회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평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금 부당수급에 따른 처리) ①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3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시 감액하는 대상 행위와 그 감액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기본이윤 총액의 100분의 5

2.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불응: 기본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③제2항에 따른 기본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업체협의회 규정위반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업체협의회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협의회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업체협의회 위원장에게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준공영제 중지)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1.도 및 시·군 제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체가 제16조에 따른 책무를 여러 차례 위반하는 경우
3.시·군 및 운송사업자, 업체협의체 등 준공영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준공영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관련 법령의 개정

5.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한다.

제21조(준공영제 제외) ①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준공영제 제외결정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22조(안전운행 방안) ①운송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도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④운송사업자는 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 [충청북도조례 제4126호, 2018.1.11., 제정]

□ 주요목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2.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3.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4.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5.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6. 도시재생 관련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801호, 2018.1.4., 제정]

□ 주요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

□ 주요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자살 예방계획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자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생자살 현황 분석
2.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

도 예방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예방계획 수립 ·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성과와 과제
3.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 · 운영)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학교장은 자살학생 · 자살미수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학생 · 자살미수학생과 이들의 가족 등에게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0.]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1197호, 2018.1.10., 제정]

□ 주요목적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 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8조(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제9조(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복지시설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7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9.]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585호, 2018.1.9., 제정]

□ 주요목적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 기반 조성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출산지원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산모, 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저출산대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시정의 제반 역량을 모으고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대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 기관·민간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① 시의 저출산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리시의원 1명
2. 관련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어린이집 원장, 기업 등 관계자
3.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관계자
-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업무 총괄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의 저출산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2. 저출산대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 제안
3.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출산장려정책 실무추진단) 위원회는 출산업무관련 부서 직원들의 업무 협의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15조(결혼장려 등)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출산지원) 시장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축하카드
3. 출산축하선물
4.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양육지원) 시장은 자녀양육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여건 개선
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경감
4.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육지원 서비스

제18조(다자녀가정 우대)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고 필요한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발·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인구교육) 시장은 시민이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결혼·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2.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3. 일·가정균형 출산친화 환경조성 사업

② 예산의 신청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3.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18.1.12.]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763호, 2018.1.12., 일부개정]

□ 주요목적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2>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합법적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 이상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2>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제4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2]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2>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세울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 2018. 1. 12>

1. 당연직 위원: 제1부시장,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나. 용인시교육지원청 · 용인동부경찰서 · 용인서부경찰서 · 용인고용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임직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 기관의 관계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0. 2, 2018. 1. 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 1. 12〉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심의
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황 조사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8. 1. 12〉

제16조(외국인주민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센터의 설치·운영을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2]

제16조의2(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2]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인의 날)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4.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자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2.]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939호, 2018.1.12., 제정]

□ 주요목적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바.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

사.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5. 함양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361호, 2018.1.5., 제정]

□ 주요목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3조(지원 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소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다만, 신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주택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시대 광주의 비전과 리더십」 토론회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광주발전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치적 리더십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광주시의회, (사)지역미래연구원 공동주최로 1월 9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은 ‘새로운 광주의 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광주를 광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혁고정신(革故鼎新, 옛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이룬다)이 먼저이며 광주정신을 담지하고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해내는 굳건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발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공진성 교수는 “거버넌스 또는 협치가 중요하며 세력으로서의 지도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중앙의 시각에서 손쉽게 관료조직을 이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리더와 지역의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세력을 형성하지 못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를 만났다. 이제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보현 의원은 ‘집단리더십과 세대교체’를 이재의 前광주시 비서실장은 ‘시민사회 싱크탱크와 집단지성을 모아내는 리더십’을 박호재 아시아경제 부사장은 ‘ARS 리더십으로 표현되는 허구적 리더십을 깨는 가치 지향적 리더십’을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5.18과 6월항쟁의 정신을 구현할 세대교체를 넘어선 세력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광서 전 전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공진성 조선대 교수의 발제와 김보현 시의회 행자위원장, 이재의 전 광주시 비서실장, 박호재 아시아경제 부사장,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지방분권개헌안」 반영촉구

16일(화)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과 지방분권 분야 개헌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가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여년 동안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이고, 지방정부가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는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국회의 개헌 내용에 반영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유임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 개헌안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개헌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어야 한다. 권력의 집중은 비효율과 독선을 초래하므로 개헌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권력구조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올해 6월의 지방선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축제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개헌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명시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새로운 헌법이야말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며 국회는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

장실과 국회 개헌 및 정개특위 김재경 위원장실을 찾아 지방분권 개헌촉구 건의안과 경기도의회 개헌안 반영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경기도의회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당연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해 8월 출범하여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지난 10일 지방분권 개헌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영상물과 책자, 토론회 개최 및 지원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개헌안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관리방안」 토론회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6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행은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의 저자 주철희 박사가 일제강점기 시설의 체계적 발굴 보존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우승희 의원의 조례안 발표, 지정토론자로는 해남옥매광산 박철희 유족회장,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 전라남도 문화재팀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내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동원, 군사시설 등의 유적이 산재되어 있으나 체계적으로 발굴·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라남도의회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한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주철희 박사는 “전라남도 내 일제강점기 시설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전으로 전해지는 각 지역의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일 도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에서 수탈과 아픔의 현장 발굴의 내용을 비롯한 어둡고 시린 역사에 대한 인식 전환, 유적 활용 방안, 체험 및 답사 프로그램 개발,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승희 의원은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홍보, 관광자원화에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일제강점기에 말살, 왜곡된 역사가 바로 세워지고 유적들에 대한 발굴과 관리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단, 겨울철 지역 현안」 점검

- AI 거점소독시설, 겨울철 가뭄대책, 국가산단 조성현황 직접 살펴 -

경상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은 1월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대비현황 점검을 위한 양산 거점소독시설, 겨울철 가뭄현황 및 대책을 위한 밀양댐, 미래50년 주요사업인 나노연구단지 조성 현장 등을 방문하는 현지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첫 방문지인 양산 거점소독시설은 날이 추워지면서 또 다시 발생되고 있는 AI를 대비한 양산지역의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의 방역활동 현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의장단은 양산 거점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에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산란계 밀집지역의 방역 중요성을 당부하였다.

두 번째 방문지인 밀양댐은 예년에 비해 42.3%밖에 되지 않는 강우량으로 심각한 가뭄에 시달려온 경남의 가뭄현황 및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가뭄의 현황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청취 후 보다 효과적인 용수비축 방안 및 가뭄상황에 대한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방문지인 밀양 부북면 제대·오례·감천리 일원에 조성 중인 나노융합연구단지는 경남미래50년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124,000㎡ 부지에 11,300백만 원(도비 2,000 시비 9,300)을 들여 조성 중인 곳으로 현 공정률이 65%정도 진행된 상태이다.

의장단은 “공사 진행 상황을 청취한 후 나노융합 산업은 밀양시 뿐만 아니라 경남의 미래가 걸린 주요산업이며 기존 경남 주력산업에 나노산업을 접목하면 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 산업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 그 기반이 될 연구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밀양의 나노관련 업체에도 방문하여 현 나노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동식 의장은 “이번 현지의정 활동은 한참 힘든 시기에 접어든 AI방역 팀 격려와 가뭄대책 및 나노융합 연구단지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한 점검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의정활동이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경남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연구결과 공유 도민대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월 9일(화)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성평등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한 워킹그룹 연구결과 공유 도민대토론회'를 개최

■ 워킹그룹 개요

- 워킹그룹은 지난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홍경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 * 서울, 부산, 인천 등은 국 단위(여성가족정책실(국))로, 충남, 전남, 경북 등은 담당관 단위의 조직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과 단위(양성평등담당)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
-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체계(조직) 재설계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워킹그룹 출범회의(1.7일), 제1차 워크숍(6.7일), 선진사례조사(7.25~26일), 제2차워크숍(8.7일), 제3차워크숍(9.13일)을 기 추진

이번 도민대토론회에서는 약 1여년 간 진행한 워킹그룹 활동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고, 발전적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

홍경희 의원의 1여년 동안 운영된 워킹그룹 활동 경과 보고와 함께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이 이루어질 예정

2017년 1월 7일 출범한 워킹그룹은 총 4번의 회의와 1번의 선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도정질문에서 워킹그룹 주요 논의내용을 지사에게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함

주제발표는 오윤정·김준표 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젠더정책 추진체계 재설계 방향>과 심경수·오순금 위원의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인사제

도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젠더정책 추진체계 재설계 방향> 발제에서는 양성평등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부여, 행정부지사 지속의 젠더정책관실 편제, 젠더정책관 신설, 부서별 젠더책임관 및 젠더담당관 지정 방안 등을 제안함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설계> 발제에서는 양성평등정책관의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운영 방안을 제안함

각 위원들의 발표 이후 외부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본 워킹그룹을 주관하고 있는 홍경희 의원은 '오늘 도민대토론회는 1여 년 간의 워킹그룹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내용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고, 더 발전적인 대안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상반기 조직개편이 실시될 경우 제안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힘

본 워킹그룹을 공동주관하고 있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워킹그룹 운영에 따른 연구결과물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제 도 정책 추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유료도로법

[시행 2019.1.17.] [법률 제15357호, 2018.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자고속도로는 제정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자도로를 신설·개축하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자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제2조제2호).

나.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다.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2항, 제21조제5항·제6항 신설).

라.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마.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제23조의7 및 제23조의8 신설).

사. 비도로관리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위반 등 민자도로사업자의 행정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7.17.] [법률 제15356호, 2018.1.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

(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 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

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제22조)

-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하는 것으로 개선함.
-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변경 시에 도시·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제46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제48조)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하여 설명·확인받도록 함.

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지원(제59조의2)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사업 역량이 부족한 토지주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 임차인 선정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 [법률 제15349호, 2018.1.16., 제정]

□ 제정이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저부담·저급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는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후에도 예비급여와 같은 제한적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항목의 경우, 일반적인 요양급여의 경우보다 높은 본인부담비율이 적용되어 중증·만성질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질병·부상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접수·지급결정·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관리운영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함(제5조).

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7조).

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실시함(제9조).

마. 의료기관 입원진료 등을 통해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사람은 금융정보 및 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공단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2조).

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비용 및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함(제13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함(제15조 및 제17조).

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규정함(제2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이 지원금액 지급결정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7.] [법률 제15362호, 2018.1.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며,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상습범위만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 수뢰죄 등 공무원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명단공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인정범위를 현행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제2조제15항).

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함(제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제2항).

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함(제18조제2항 신설).
- 라.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원인행위로 추가함(제19조제2호의2 신설).
- 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 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분쟁조정 관련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함(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 바. 3배 배상제도의 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함(제35조).
- 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상습범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제36조 신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7.] [법률 제15352호, 2018.1.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범죄자의 거주지로 고지된 주소가 실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소와 달라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부처 및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지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3헌마 585등 2016. 3. 31. 결정 등) 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함.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포함함으로써 이들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51조의2 신설).

나. 아동·청소년대상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을 포함함(제56조).

다. 부칙규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에 대하여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또
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함(부칙 제4조, 제5조).

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8.7.17.] [법률 제15355호, 2018.1.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제1조).
-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에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를 포함하도록 함(제5조의2).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함(제5조의3 신설).
- 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함(제5조의4 신설).
- 마.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 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 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에게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제3호가목).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등 관련)

[의견17-0328, 2018.1.11, 부산광역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조례로서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기한을 앞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법령에서 정한 기한보다 예산안 제출 시한을 당기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예산안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안심의권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권한배분 원칙에 관련되므로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인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같은 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취지를 살펴본다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기관의 예산안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로서 예산안의 제출시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로서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달리 예산안 제

출시한을 정하게 되면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게 될 소지가 있고,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같이 지방의회가 조례로 집행기관의 예산안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령과 다른 견제장치를 두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예산안편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4. 10. 17. 의견제시 14-0215 참조).

따라서 조례로서 법률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기한을 앞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제5항 관련)

[의견17-0326, 2018.1.11, 제주특별자치도]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제5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제주도조례안”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회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52조제5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공공용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에 해

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법 제152조제5항에서는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되,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도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제주특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제주특별법 제152조제5항 전단에서는 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지사의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관한 도의회의 통제 및 관여 정도를 제주특별법에서 직접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제주특별법 제152조제5항 후단에서는 도지사의 사전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편,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지사의 사후 보고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전 보고 절차를 조례로 추가하는 것은 도지사의 “개발용 토지의 안정적 취득·처분”을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52조제5항의 목적에 반하여 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도지사가 개발용 토

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도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사전 보고나 의결 없이도 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개발용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제주특별법 제152조제5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의견17-0322, 2018.1.5, 강원도원주시]

【질의요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원주시장에게 부여한 임명·위촉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원주시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당연직 의원은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국장이 되며, 민간 위원은 대학교수(제1호), 관련 분야의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제2호), 원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원주시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

회 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법규인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9.27. 선고 2012추1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원주시장의 소속으로 두면서 위원회의 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은 원주시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주시 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원주시장의 임명·위촉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조례안에서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원주시장에게 부여한 임명·위촉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의견17-0320, 2018.1.5, 경기도남양주시]

【질의요지】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제1호),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제1호의2), 평생교육 상담(제2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제3호),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제4호),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제5호),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제6호)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남양주시조례안”이라 함) 제15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제6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제7호),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남양주시조례안 제15조제6호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우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서도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의견17-0319, 2018.1.4., 경상남도 거창군]

【질의요지】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에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제2호) 등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는 법무부장관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등의 소속기관을 두고,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6호에서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장소 선정이나 방법 등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거창군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여 국가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 선정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서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부장관 소속 지방교정청장의 소속으로 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는 결국 국가기관인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속기관의 설치 여부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조례안 제4조제6호에서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중 국가가 설치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조례안에서 국가가 설치하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8 년 1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